

#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전철수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27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1월 14일

발 의 자 : 전철수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최웅식, 유찬중, 김인제, 최영수,  
김광수(도봉), 김진철, 이석주,  
이숙자, 우미경, 유동균, 맹진영  
의원(11명)

## 1. 제안이유

현행 「주택법」 개정사항 및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시행사항을 반영하기 위함.

## 2. 주요골자

가. 현행 「주택법」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수정사항을 반영함(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)

나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정·시행에 따른 일부 조문을 삭제·이동함(안 제9조의2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택법」,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,  
「공동주택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

##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 중 “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2조의16제1항”을 “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 중 “「주택법」 제38조의2 및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1 제10호”를 “「주택법」 제57조 및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1의3 제12호”로 한다.

제9조의2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의2(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 주택의 비율)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2조의16제1항에서 "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"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.</p>	<p>제7조의2(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 주택의 비율)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----- -----.</p>
<p>제8조의2 (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보급)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「주택법」 제38조의2 및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 1 제10호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의2 (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보급) ----- 「주택법」 제57조 및 「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1의 3 제12호----- -----.</p>
<p>제9조의2 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) ① ~ ③ (생략)</p>	<p>〈삭 제〉</p>